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75

발의연월일: 2021. 11. 17.

발 의 자:임이자·구자근·추경호

박대수 · 김성원 · 권영세

조명희 · 이명수 · 송언석

권명호 · 양금희 · 김형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지속적으로 허가 없이 증식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함.

또한, 허가 없이 소유·점유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허가 없이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있음.

이에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추가하고, 불법 인공증식 개체와 불법 인공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하도록 하여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및 제71조제3호).

법률 제 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로 한다.

제7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벌칙) ① (생 략)	제6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	② <u>제1항제1호, 제2호,</u>
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사	제4호 또는 제5호의2
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71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1조(몰수)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
	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
	<u>종위기종</u>